비조치의견서 (♥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검사국	T .	김진원	<u></u> 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을 위해 DMZ에 있는 '중계서버'를 통하여 클라우드 또는 인터넷망에 위치한 '취약점 점검 서버'와 내부망의 '취약점 관리 서버'가 통신*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 * '취약점 관리 서버'에서 소프트웨어 Hash값을 '중계서버'를 통해 '취약점 점검 서버'로 전송하고,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유무 결과를 수신받음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운영 외투 15조	명, 개발, 보안 목격 부통신망으로부터 : 제1항 제5호)	석으로 직접 물리적으로	접속하는 단 분리하여야	말기에 I 합니다.(강 정보처리시스템의 대해서는 인터넷 등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 스템과 실시간으로
	적· □ 따리 '취약	용이 가능합니다(「 나서 수시로 업데이	전자금융감독]트되는 오 - DMZ에 9	규정시행세칙」? 픈소스 취약점 있는 '중계서]	에2조의2 저 남을 점검 버'를 통해	하기 위해 내부망의하여 클라우드 또는
	대최		금융감독규정	성시행세칙」 저	∥2조의2조	내 및 정보유출 예방 3항에 따른 망분리 200064).
		한, '취약점 점검 서 14조의2(클라우드침				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용됩니다.

- **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**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